



특허 Q&A

Q.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A.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유럽특허청(EP), 미국(US), 일본(JP), 스웨덴(SE), 호주(AU), 오스트리아(AT), 러시아(RU), 중국(CN), 대한민국(KR), 스페인(ES), 캐나다(CA), 필란드(FI), 노르딕(XN) 총 13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R), 오스트리아 특허청(AT), 일본특허청(JP), 호주특허청(AU)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되, 일본특허청을 예비심사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언어를 일본어로 선택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Q.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수령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A.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34조 보정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견해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작성됩니다.

보정시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보완, 정정 신청, 추가 신청)서를 이용하여, 의견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의견(소명) 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